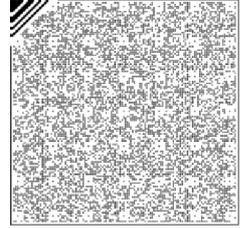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수신 해당 적치물 소유자 귀하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550-1)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도로안전운영과-8135(2023.9.18), 도로안전운영과-11087(2023.12.14)의 관련입니다.
2. 우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 47호선 도로구역 내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550-1번지)에 행위자께서 임의로 불법적치물을 적치함에 따라 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 위 문서를 통해 자진철거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아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불임과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처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불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2024.03.08.까지 우리 사무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행정대집행 계고를 취소하기 위한 합리적 의견이 아닐 경우 사전통지서 내용대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직원	김효식	주무관	조한근	도로안전운영 전결 2024. 2. 20.
협조자	주무관	임재영		과장     한병동
시행	도로안전운영과-1534	(2024. 2. 20.)	접수	
우	11796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53(용현동)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http://www.molit.go.kr/srocm
전화번호	031-820-1724	팩스번호	031-847-7680	/ tublenc3@molit.go.kr     / 비공개(6)